#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4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박 정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이수진 · 임미애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3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본회의, 위원회"로, "포함한다)가"를 "포함한다) 또는 의원이"로, "위원장"을 "위원장이,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을 "본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류등"을 "서류등을 요구한 의 원의 명의 또는 서류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 본회의, 위원회-----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포함한다) 또는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의원<u>이</u>-----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 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 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u>위원</u> 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원장이,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 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후단 신설> 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7)·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u>의원은</u>-----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 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

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 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의 명의로 한다.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서류등을 요구한 의원의 명의
<u> 또는 서류등</u>
④ (현행과 같음)